

## 공시송달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한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 취소(등록기준 미달)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19년 8월 1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예정된 처분의 제목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 취소							
당사자	성명	(주)벽상해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칠십리로 72번길 1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19.6.3. 보유선박(벽상3001,벽상3002) 감선 후 현재('19.8.14.)까지 「해운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3의 선박보유량 기준 미달								
처분할 내용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 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해운법」 제19조제1항제5호 (면허의 취소 등) 「해운법」 제32조 (준용규정)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3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								
청문실시	기관명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서명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담당자 양혜영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28			전화 번호 064-720-2647				
	일시	'19.9.6. 14:00~15:00			장소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성명	제주해양수산관리단 해양주산주사 정의철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불임1 양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게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불임1 양식의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분함을 알려드리며, 본 사항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064-720-2647)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유의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